

과업지시서

사업명

가락물 홍보 영상 제작

2016. 4.



서울시농수산물공사

홍보팀

목 차

1. 과업 개요	1
2. 과업 일반사항	2
3. 과업 세부사항	3
4. 계약해지 등	4
5. 기타 사항	5

I

과업 개요

1. 과업명 : 가락물 홍보 영상 제작

2. 과업내용

- 가락물의 현황, 역할, 특·장점, 입지,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 할 수 있는 대표 홍보 영상물 1편, 요약 영상물 1편 제작
-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변화한 가락물의 현재와 활성화된 미래 발전 모습 구성
 - 과거 노후된 시장과 새로 개장한 현재 시장(가락물) 비교
 - 가락물 시설 현황 및 동별 특징, 영업 현황 소개
 - 활성화가 완료된 가락물의 미래 발전 모습 부각
- 타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가락물이 가진 특·장점 부각 및 왜곡·부정적 인식에 대한 사실 설명
 - 대형유통업체 등 다른 업체와 비교하여 가락물 장점 소개
 - 건설·입주 과정에서 일부 제기되었던 부정적 우려에 대한 사실 설명
-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여 가락시장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의 당위성 및 정상적인 추진 필요성 강조
 - 시설현대화사업 완공 후 모습 및 역할에 대한 기대감 등을 담음
- 시장 활성화 및 고객만족을 위한 가락물의 이미지를 매력적인 영상으로 표현
- 최신 트렌드에 맞는 영상물로 최신 수준의 실제 촬영과 첨단 컴퓨터 그래픽 활용으로 시각적 효과 제고

3. 과업기간 : 착수일로부터 40일(2016년 4월 ~ 5월)

4. 사업개요

- 제작범위 : 기획, 촬영, 녹음, 편집 등 영상물 제작 일체
- 제작분량 : 홍보영상 6분 내외(협의 후 조정가능, 30초 분량 요약본 별도 제작)

- 제작방식 : Full HD 고화질 실사촬영 및 편집 제작, CG(3D, 2D) 작업
- 제작수량 : 홍보 영상물 2종(완성본 1편, 요약본 1편)
- 성과제출 : 완성본 및 요약본

구 분	가락물 홍보 영상 제작 용역
활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락물 대·내외 활동의 기본 홍보물로 활용 ○ 그랜드 오픈 기념식 등 행사 개최시 시청각 자료 활용 ○ 유통인, 지역주민의 공감을 형성하는데 활용 ○ 홈페이지 동영상 홍보관 및 블로그 게시로 홍보 효과 제고
분 량	완성본 6분 분량, 요약본 30초 분량(협의 후 조정가능)
제작언어	한국어
납품유형 및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CD(파일) 1,000개 / DVD 100개 ○ 보관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HD 마스터 파일 : 촬영원본 - HD 클린 파일 : 촬영원본 - MPEG 파일 : 편집원본(대용량, 저용량) - 외장하드(2) : 촬영원본, 편집원본 등 과업내용일체

II 과업 일반사항

1. 본 과업지시서는 "가락물 홍보 영상 제작"의 과업내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, 규정 등을 연계 검토한 후 서울시농수산물공사(이하 "공사"이라 함)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
2.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.
3.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성과품에 대한 보완 및 추가수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작업체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한다.
4.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공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.

5. 과업수행 중 공사가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하여 과업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협의하여 이행한다.
6.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.
7. 제작업체는 본 과업의 목적, 취지,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사가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기획·제작한다.
8. 과업의 제작방향, 기획 등은 제작업체가 구성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9. 제작업체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, 세부수행 계획, 참여인력 등이 포함된 "과업 수행 계획서"를 제출하여야 한다.
10.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인력 및 장비 등을 투입하되 공사의 요구 시 추가적으로 투입하여야 한다.
11. 성과물은 납품 전 2회 이상 보고회를 실시해야 하며 다양한 의견 제시가 있을 시 수정·보완 하여 성과물을 납품하여야 한다.
12.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약대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 완료인 3일 전에 관계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III 과업 세부사항

1. 모든 영상자료는 원칙적으로 새롭게 촬영하여 활용하되 부득이 한 경우 기존 자료화면을 활용할 수 있다.
2. 본 과업 수행시 동영상 촬영, 입체화상 및 2·3차원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문성과 독창성이 발휘된 성과물이 되도록 한다.
3. 제작업체는 영상물 제작과 편집을 위한 자체 전문기술 인력과 영상촬영 비디오카메라(full HD급), 동영상과 입체화상 및 2·3차원영상, CG 제작 및 편집기기 등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, 제작과정에 참여·활용하여야 한다.

4. 본 과업은 2·3차원 영상,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 CG, 동영상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술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다양한 웹 환경에서도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.
5. 조명은 디지털 영상의 색감 및 화질을 최상의 상태로 촬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을 투입한다.
6. 음악 및 효과음은 다양하고 박진감 넘치게 구성해야 하며 음악 판권에 문제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한다. 문제 발생시 제작업체에서 책임을 져야한다.
7. 필요한 자막, 그래픽 등은 작품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절히 삽입하되 간결하고 명료하게 구성한다.
8. 시스템 환경에 따른 호환 가능한 파일 및 형태로 제작 구성한다.
9. 영상물 원본은 공사에 제출하고, 최종 성과품의 지적소유권은 공사가 소유하며 제작업체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.

IV

계약해지 등

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,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작진행중 공사와 사전 협의 없이 인력, 장비,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
2. 기획, 구성, 편집 등 제작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
3. 제작 목적 및 추진 방향과 상이하거나 또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
4. 기타 공사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5. 제작업체의 잘못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미루어질 경우 지체상환금을 부여한다. 단 지체상환금 부여기준은 관련법에 준한다.

상기 계약해지사항에 해당할 경우 공사는 계약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계약업체는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V

기타 사항

1. 본 사업과 관련한 판권과 저작권은 공사의 소유로 한다.
2. 완성품 파일 형태로 공사에 납품해야하며, 공사의 승낙 없이는 복사 유출 할 수 없다.
3. 납품 전 시사회는 제작자 책임 하에 실시하되 시사회에 필요한 각본 과 구성 시나리오, 방영될 영상물 등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.
4. 제작에 있어서 특정업자와의 일체의 하도급 행위를 불허한다. 단,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변경·총원할 수 있다.
5. 제작에 있어 제3자에게 불법·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제작사가 이를 손해 배상한다.
6. 타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문제발생 시 제작사에서 책임진다.
7. 보고절차
 - 수시보고
 - 과업내용 중 특이사항 발생시
 - 긴급 변경작업 발생시
 - 계획대비 실적차이(부진사유 및 조치계획)
 - 업무현황 및 변경보고
 -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
 - 영상 제작 결과물 시연회 및 의견 교환